



치매관리법
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904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건강과) 044-202-3538, 3534

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